

# 일반대학원 한의학과 학사운영지침

제정 2013. 3. 21.

개정 2021. 3. 17.

개정 2021. 12. 30.

**제1조(목적)** 부산대학교 일반대학원 한의학과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전공과목 개설)** 전공과목은 한의학전문대학원 경락구조의학교실, 약물의학교실, 양생기능의학교실, 응용의학교실, 인문사회의학교실, 임상의학 1교실, 임상의학 2교실, 임상의학 3교실, 임상의학 4교실, 한의과학과를 기본 단위로 하여 각 교실의 구성원이 참여하여 개설한다. 단, 필요할 경우 한의학전문대학원 한의과학과 교원이 참여할 수 있다.

**제3조(한의학 학술편역과정 운영위원회)** ① 한의학 학술편역 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한의학 학술편역과정 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일반대학원 한의학과장, 한의학전문대학원 한의과학과장 그리고 한의학전문대학원장이 임명하는 5명 이내의 전임교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일반대학원 한의학과장과 한의학전문대학원 한의과학과장이 호선한다.

③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
④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.

1. 신입생 모집과 관련된 제반 활동
2. 전공의 신설 및 폐지 심의
3. 전공별 모집인원 배정 심의
4. 학기별 개설 교과목 결정
5. 교육과정 관련 제반 활동
6. 학위논문 관련 제반 활동
7. 한의학과 운영지침의 개정 심의

**제4조(학위논문 제출 자격시험)** ① 학생이 이수한 교과목 중에서 석사과정은 3과목, 박사과정은 4과목으로 한다.

② 출제, 감독 및 채점은 과목 담당교수가 한다.

③ 학위논문 제출 자격시험의 평가는 본 운영지침의 제7조 준용규정에 따른다.

**제5조(학위청구논문 제출요건 및 심사과정)** ① 학생은 학위논문 제출 자격시험을 통과하여야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.

② 박사과정 학생은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기 전에 국내 학술진흥재단 등재(후보)

학술지에 2편 이상 또는 국제학술지[SCI, SCIE, SSCI, A&HCI]에 1편 이상의 논문을 게재(확정)하여야 한다. 이 때 학위과정 학생과 지도교수가 주저자이어야 하며 입학 후 6개월 이상 경과한 시점 이후 게재된 것만을 인정한다.

③ 석사 또는 박사과정학생은 학위청구 논문제출 6개월 전에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은 학위청구논문 작성 계획서를 제출하고 제출 2주 전까지 '한의학 학술학위과정 운영 위원회 위원장'의 주도 하에 공개 발표하여야 한다.

④ 대학원생의 학위논문 심사 시 대학원생은 표절방지프로그램 검사결과를 의무적으로 제출하고, 학위논문 심사위원은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.

**제6조(신입생 배정)** 박사과정 학생 배정은 각 학년별로, 교수 1인당 1명으로 제한한다. 다만, 총장의 승인으로 2명까지 가능하다. 단, 정년퇴임까지의 재직잔여 기간이 2년 이하인 교수에게는 학생을 배정하지 아니한다.

**제7조(준용규정)**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본 대학교 학칙, 학사 운영 규정 및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규정 등을 준용한다.

부 칙 (2013. 3. 21.)

이 지침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2021. 3. 16.)

이 지침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칙 (2021. 12. 30.)

이 지침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